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1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2
2. 목재펠릿의 원산지 등 공개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역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6(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해외에서 목재생산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목재생산업체의

현행	개정안
	<u>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u> <u>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해당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u> <u>④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가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산림훼손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u> <u>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u> <u>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u>

현행	개정안
	<u>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 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¹⁾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며, 합법벌채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음.²⁾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목재펠릿, 원목,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목재펠트를 말함.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제출된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과 필요시 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 국가 및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³⁾ 서류 확인 및 발급 국가 등에 대한 확인 요청만으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현지 실사하여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의료기기법」 등이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⁴⁾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② 검사기관은 관계 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지실사	450	427	382
적발(판정)	38 (부적합 24, 개선필요 14)	37 (부적합 27, 개선필요 10)	46 (부적합 27, 개선필요 19)

※ 주1: ‘부적합’ 판정된 곳은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곳은 개선명령 조치

※ 주2: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개정('18.12월) 이후 2023년까지 78개소 현지실사 실시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제도 관련 국내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u>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u>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법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1. 해외에서 위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료기기(이하 이 조에서 “수입의료기기등”이라 한다)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의료기기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료기기등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③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은 수입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그 수입의료기기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수입 중단 등의 조치와 그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이 불법벌채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자국 내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를 하기보다는 수입업자가 불법벌채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를 위해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제도 관련 국외 입법례 】

국가	관련 사항
미국	○ 2008년부터 Lacey Act를 통해 불법벌채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및 주의·조치 의무(Due Care)를 가짐.
EU	○ 2013년부터 EUTR(목재규정)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정보 수집, 불법벌채 위험평가, 위험 완화 조치 등의 의무(Due Diligence)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EUDR(산림 전용방지법)을 제정하여 불법벌채 외에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호주	○ 2014년부터 ILPA(불법벌채금지법)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정보 확인, 합법벌채 여부 평가, 위험 완화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
일본	○ 2017년부터 Clean Wood Act를 통해 수입업자는 합법증명서류 등 목재 및 목재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료 : 산림청)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관계 기관 등 의견 】

기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산림청	○ 현행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서류검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실사는 필요하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 등 수입중단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 개정 취지 및 현지실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
한국임업진흥원	○수입중단 조치는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지실사 및 결과 도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선행 필요
목재수입유통업계	○ 해외 목재생산업체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목재 원가 상승 등 산업계 영향 우려
전문가 의견 (트레이드파트너스, 무역컨설팅기업)	○ 국제통상 규범에서의 국가간·국내외간 비차별성 원칙, 최소 규제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 입법예고 등록의견	○ 외교적 갈등 및 통상마찰 우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악용될 우려, 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 국제무역 질서 위배 및 공정성 논란 야기 가능 등 반대 의견 다수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참고2, 3) 참조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서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의견, 국외 현지실사(행정조사)의 실효성 문제, 국외 입법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5)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및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확인 결과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목재펠릿의 원산지 등 공개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수입 목재펠릿에 대해 원산지, 목재제품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목재펠릿의 원산지 등 공개)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⁶⁾ 목재펠릿의 원산지, 목재제품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현행법령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며,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 생산지 또는 생산국, 목재제품의 생산일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6) 목재펠릿의 수입주체가 산림청장으로 이해되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개정안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현행 공개되고 있는 생산지, 생산국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내용 외에 목재펠릿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관계 기관 등 의견 】

기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산림청	○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목재펠릿의 원산지, 목재 제품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② 제1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목재펠릿의 원산지, 목재 제품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에 관한 정보'로 수정 필요('등'은 삭제)
한국임업진흥원	○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체의 형평성 침해 소지가 있음.
목재수입유통업계	○ 현행 제도로도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음.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정보공개는 특정 기업의 영업기밀 공개로 영업활동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함.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협회	○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 실현이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참고 2) 참조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의 필요성, 타 목재제품 간 형평성 문제 및 기업의 영업기밀 공개에 따른 영업활동 저해 우려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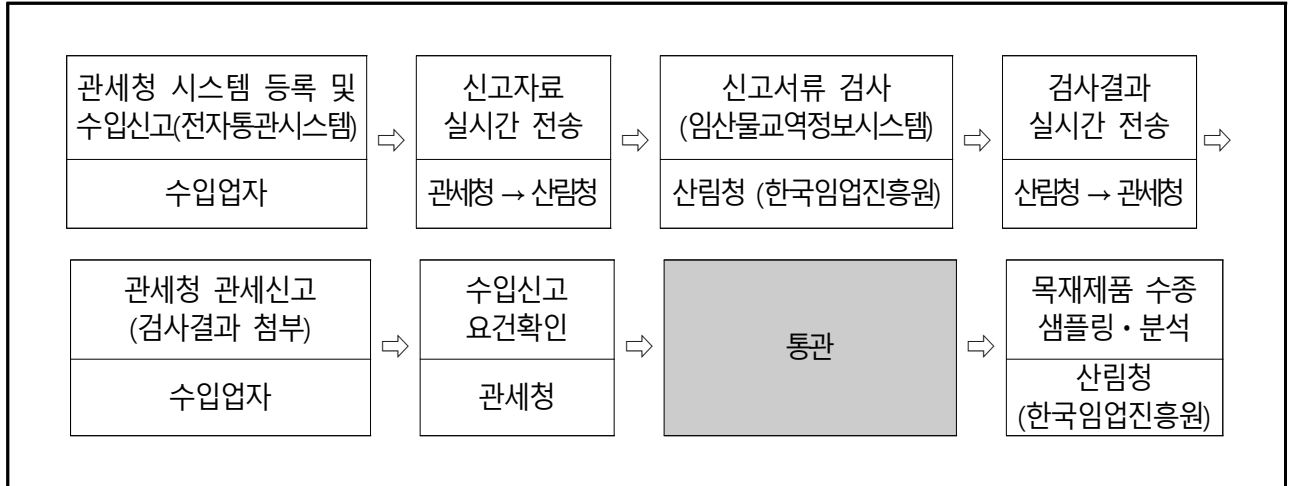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현황('19년~'24년)

□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 수입신고 현황

(단위 : 건)

품 목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단판
건 수	23,406	79,961	100,070	32,752	694
품 목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프	합계
건 수	3,516	3,495	1,153	5,492	250,539

* 대상 품목(9개) :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프

* '23.5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4개 품목 → 9개 품목으로 확대

(자료 : 산림청)

참고 2

관계 기관 의견

법조항	목재수입유통업계	협회·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제19조의6	-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목재 원가 상승 산업계 영향 우려 - 합법성 증명서류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 - 현지실사를 위한 대상 선정, 평가 등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현지실사 시 비용 부담 주체 확인 필요		수입 중단 조치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지실사의 과정 및 결로 도출에 명확한 판정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제23의2	- 원산지, 품질 등급, 수출입 업체 정보 등은 세관에 제출하며, 목재 제품 인증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라 합법성 서류로 신고 중 - 구매자(End User)에게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수입마다 공유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로 전체 공개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큼 - 기업의 영업기밀 공개로 정상적 영업활동 저해 우려 - 현 제도의 관리시스템으로 충분히 관리 감독 가능 -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으로 상호 필요한 정보 공유됨 - 수출국 이의 제기 및 수입 가격 상승으로 비용 증가 예상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 실현 기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체의 형평성 침해 소지 사유

(자료 : 산림청)

□ 전문가(트레이드파트너스, 무역컨설팅기업) 의견

- 본 법안은 불법벌채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
 - 하지만, 적용 방식에서 특정국 차별, 과도한 절차,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WTO 통상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EU 팜유 사건은 환경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차별성 및 최소규제 원칙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안도 실사 절차의 객관성, 일관성, 최소규제성 확보가 요구됨
 - 다만, 본 의견은 하나의 WTO 분쟁사례만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WTO 관련 규정 전반에 세밀한 분석을 모두 포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활용되길 바람
-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과잉조치' 및 '자의적 차별'로 인해 WTO의 '무역제한 최소화 원칙' 위배 위험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음

□ 국회 입법예고 등록의견

-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경쟁사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 국제 관계에서 특정 국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 반대함
- 외교적인 부담이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서류 검사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대함
- 수입 중단 조치의 과도성 및 무역 장벽 가능성, 현지실사 기준 및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 목재펠릿 원산지 등 공개의 실효성 및 정보 접근성 문제, 수입업체의 부담 증가 및 통관 지연 우려, 신흥국과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미흡 등으로 반대함 등

(자료 : 산림청)

참고 4

목재펠릿 규격·품질 검사 결과 표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부속서 11]

7. 표시

7.1 표시 사항 목재펠릿은 상품명, 용도, 등급, 생산국, 품질표시항목, 무게, 생산자, 생산 연월을 표시한다.

7.2 표시 방법

7.2.1 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20 cm 이상, 가로와 세로는 2:3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7.2.2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7.2.3 부착 또는 인쇄할 수 없는 경우, 품질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급자가 보관하며, 1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다.

<목재펠릿 표시 예시>

목재펠릿 규격·품질		
상품명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	
종 류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 또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표시	
등 급	용도에 맞추어 목재펠릿의 등급 표시(예: A1)	
생산국	생산 국가 표시	
품질 표시 항목	지름	지름 등급에 해당하는 기호를 표시(예: D06)
	겉보기밀도	“000 kg/m ³ 이상”으로 표시
	함수율	“00 % 이하”로 표시
	회 분	“0.0 % 이하”로 표시
	순발열량	“00.0 MJ/kg”로 표시
	질소, 황, 염소	“N 0.0 %, S 0.00 %, Cl 0.00 % 이하”로 표시
	무기물	“As 0 mg/kg, Cd 0.0 mg/kg, Cr 00 mg/kg, Cu 00 mg/kg, Pb 00 mg/kg, Hg 0.0 mg/kg, Ni 00 mg/kg, Zn 000 mg/kg 이하”로 표시
	첨가제	첨가제 종류와 양을 “000 0.0 % 이하”로 생산자가 표시
권장 항목	회분 용융 거동	“0,000 ℃”로 표시
무 게		포장무게를 kg 또는 톤 단위로 표시
생산자 (수입자)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
	회사명	회사명을 표시
생 산 연 월		목재펠릿을 생산한 연, 월을 표시(별도 표시 가능)

(자료 : 산림청)